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84 발의연월일: 2024. 12. 13.

발 의 자:유용원·강선영·성일종

김용태 · 임종득 · 박상웅

정성국・김 건・박수영

박정훈 · 조경태 · 한기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,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체로부터 기술, 성능, 비용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, 이에 관한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 기됨.

이에 방위사업청장은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, 이에 따른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 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(안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). 법률 제 호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"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·소요시기 및 소요량, 국방과학기술수준, 방위산업육성효과, 기술적·경제적 타당성, 비용(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)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·분석을 한 선행연구"를 "선행연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각군 및 관계 부처"를 "각군, 관계 부처 및 방산업체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방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의 분석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	제17조(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
법 등)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5	법 등) ①
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	
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	
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	
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	<u>선행연구</u>
발의 가능성・소요시기 및 소	
요량, 국방과학기술수준, 방위	
산업육성효과, 기술적·경제적	
타당성, 비용(무기체계의 획득	
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	
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)대비	
효과 등에 대한 조사・분석을	
한 선행연구(先行硏究)를 거친	
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	
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전	
시·사변·해외파병 등 방위력	
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	
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	
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	
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	
니하며, 방위사업청장은 같은	
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	

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 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 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 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에는 국방과학연구소, <u>각군 및</u>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 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(생략)

2
각군, 관계
부처 및 방산업체
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
른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
관련 방산업체에 필요한 자료
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④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의
분석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
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